

■ 보험계약 인적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실 분

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직장명/하시는 일
				/
보험계약자				보상 안내 받을 분: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 사고사항 (해당 사고유형에 V표시) ☐ 상해 ☐ 질병 ☐ 교통사고 ☐ 화재 ☐ 배상책임 ☐ 추가청구(추가청구 시 V표시)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진단(치료)병원		진단명	
사고경위 (내원경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 ☐ 예 ☐ 아니요 처리보험사:		

※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약관조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수령하실 계좌 ※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아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위임장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사망보험금 청구 시 제외)

본인은 금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한과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계약소멸에 따른 환급보험료가 있는 경우 포함)를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 이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위임하는 분	성명:	☐ 인	주민번호		위임받는 분과의 관계	
위임받는 분	성명:	☐ 인	주민번호		위임하는 분과의 관계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각 동의란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I.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 거부에 관한 안내: 당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상기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보험금 지급심사(잔존물대위, 구상관련 업무포함),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포함), 분쟁·민원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보험금 지급심사(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포함), 분쟁·민원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귀하의 보험계약정보, 사고 및 보험금지급 정보, 질병·상해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 조회 동의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3.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상기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 의료심사, 의료자문, 손해율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사고정보의 집중·관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손해보험협회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재(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당사는 상기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위 1, 2, 3의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 동의

※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뒷면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시간, 지급기일 등)를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일자: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대리인)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자: (서명)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셔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대표 번호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센터(1544-279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 09~18시)
- 증권 재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당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거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고 접수시 함께 보내주시면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당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의료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입원 중간까지 발생된 의료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 ② 중증질환자, ③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② 또는 ③의 경우는 입원하신 병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합니다.
-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환자)를 의미합니다.
- 동 서비스 신청 시에는 보상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신 후 '실손의료비 신속지급(선지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 3차 의료기관 :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 또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aig.co.kr/company)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이며,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 소비자 보호실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접수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8층 AIG손해보험 소비자 보호실

※ 전화상담 : 소비자보호실 (02) 2260-6939 및 고객센터 (1544-2792)

■ 상해, 질병사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보험금신청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통원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통원일자별)처방전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단, 3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같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추가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골 절	- 진단서 · 처방전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 ·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응급입원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또는 응급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보상접수방법안내

콜센터/홈쇼핑/인터넷 가입고객

▶ 가입하신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8층 (서소문동, 부영빌딩)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TEL: 1544-2792(TM가입시), 1644-9002(지점가입시)/ FAX: (02)2011-4607

상해/여행자/특종/화재보험 접수방법

우편(등기)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셔서 아래 주소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8층 (서소문동, 부영빌딩)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TEL: 1544-2792(TM가입시), 1644-9002(지점가입시)/ FAX: (02)2011-4607

[\[전국 보상망 보기\]](#)

자동차보험 접수방법

▶ 피해자 후송 및 구호조치

- (1)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 표시를 한다.
- (2)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촬영을 한다.
- (3)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메모한다.

▶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지서, 파출소)에 사고발생신고를 한다.

▶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신고 (☎ 1544-0911)

- (1)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각종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평소예 사고에 대비하여 스프레이, 1회용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사고초기 증거확보가 용이하며,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